論 壇

山林法施行規則 第17條 改正에 對한 建議

〈本會 總務課長〉 金 熱 洙

序 論

造林用種子 또는 苗木의 販賣를 業으로하는者는 山林法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生産地道知事에게 登錄을 하게 되어있다.

登錄을 하게한 法趣旨는 不良한 種子 또는 苗木의 生産販賣를 禁止시키고 種苗의 遺傳形質이나 規格이 優良한것만 生産 供給하여 造林의 成果擧揚을 目的으로 하는 것으로 窺知하고있다.

이러한 뜻에서 一定한 資格者만 登錄을 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또 이에따라 當局에서 種苗의 生産販賣監督을 하고 있음은 林業將來를 爲하여 多幸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다만 筆者가 擧論코저 함은 種苗販賣業도 一種의 生産業으로 原始的인 經營方法을 脫皮하고 專問業으로써 經營의 合理化로 發展시키기 爲하여는 生産規模가 零細해서는 他祖宗業의 副業化하기 쉽고 따라서 本業에 專念을 하지 않음으로서 專問化, 技術化 또는 機械化에 相當한 阻害가 될것임을 生覺할 때 現 山林種苗生産業의 專問化 또는 技術化로 健苗生産供給을 爲하여 現行山林法施行規則 第17條에 規定된 種苗生産販賣業者 登錄資格規程의 再檢討가 必要하다고 認定된다.

本 論

山林法施行規則 第17條에 山林種苗販賣業 登錄資格을 보면

① 高等學校林科를 卒業하고 種苗技術 關係分野에 5年以上 從事한者

② 大學林科를 卒業하고 種苗技術關係分野에 2年以上 從事한 者

③ 林業職 公務員으로 10年以上 勤務하고 種苗技術分野에 3年以上 勤務한者로 되어 있다.

以上의 山林法 施行規則上으로 보아서는 前세가지 資格規程中의 하나에 該當되지 않으면 山林事業用 種苗의 生産販賣를 못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 規程은 다음과 같은 問題點이 있다고 볼수 있다. 例를 들면 一生을 山林種苗 生産業에 從事를 해서 技術은 他의 追從을 不許할程度로 資格을 所持한者이나 資本이 없어서 種苗生産 販賣業登錄을 해놓고도 實地生産을 할수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反面에 現行 山林法施行規則上 登錄資格은 않되지만 種苗販賣業에 資質은 保有하고 있고 또 資本金도 있어서 種苗販賣業을 해 볼려고 하는 個人이나 法人이 있을때 登錄을 할 수 없음으로써 種苗生産이 不可能하게 된다.

모름직이 序論에서 論한바와 같이 企業의 合理化를 爲하여는 企業의 資本과 經營의 分離라는 發展的 過程推勢를 보드라도 이러한 矛盾點을 是正하기 爲하여 現山林法 施行規則 第17條 第3項 다음에 第4項으로「前 1 2 3項의 資格을 所持한 者를 雇傭한 個人 또는 法人」이란 項을 新設하여 補完함이 妥當하다고 본다.

이러한 第4項의 新設은 資本과 經營이 分離된 合理的 企業의 經營方法으로 보다 낳은 技術과 資本이 渾然一體가 되어 相互 協同으로 種苗業의 專問化, 또는 技術化로서 보다 낳은 健苗가 生産되리라고 보는 것이다.

山林法 施行規則 第17條 第4項의 新設은 비단 上記한 意義만 있는것이 아니다. 種苗生産業者

의 財產은 苗圃地 農具等 固定的 財產이 絕對的 比重을 찾이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이러한 圃地나 農具는 特殊性이 있어 山林苗圃業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로 賣買되는 일이 거이 없어 財產處分이 極히 어려워서 轉廢業이 어렵고 施業者는 不得已 그 財產을 自己 子孫에게 相續하기 마련이고 이를 물려받은 者가 多幸히 現山林法上 規定된 種苗生產販資業 資格者면 그 業을 繼續할 수 있으나 그러지 못할 境遇에는 貴重한 財產을 死藏할 道理밖게 없게되는 結果가 된다. 그럼으로 養苗施設을 물려 받은 者가 現山林法 施行規則上 資格은 않되드라도 前4項을 新設했을 때 種苗生產 販賣業 資格者를 雇傭하면 足히 그 生產業을 維持 繼續할 수 있다고 본다.

結　論

山林事業用 種苗業이 一般 農業이나 他產業의 副業이 되어서는 絕對로 優良苗 生產을 保障하기란 힘든다고 본다. 이를 專業化하기 爲하여는 技術과 資本의 結合이 絕對 不可缺의 要素이며, 또 山林種苗生產業이란 一次 產業中에서도 特殊性을 지닌 事業의 財產權의 承繼問題等을 勘案할때 本論에서 記述한 山林法 施施行規則第17條 第4項 新設을 主張한다.

또 여기에 付言할것은 山林法上에 種苗生產販賣業의 諸條項을 보면 種苗販賣業者로 規定되어 있는바 字句나 語義上으로는 種苗生產販賣業者라 하면 種苗의 生產과 販賣 다시말하면 生產이란 一次產業 販賣란 二次產業을 兼한것이고 種苗販賣業이라면 販賣란 二次產業만 規定함으로 法解釋上 여러가지 實際問題가 惹起되고 있다.

또 山林法 第15條에는 種苗販賣業으로 規定되어 있고 本法第15條에 依한 施行令이나 施行規則에서는 生產販賣로 規定되어 矛盾性이 있음으로 이도 生產販賣로 應當 統一이 되어야 된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法에서는 登錄業者以外 生產分은 販賣를 禁止시키고 不良苗로 取扱하여 沒收 廢棄處分하도록 規定되어 있음으로 健全한 種苗需給 秩序를 바로잡기 爲하여 法精神대로 實地履行이 되어야 된다고 본다.